

서울특별시의회
제319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
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3. 6.

서울특별시의회
심미경 의원(국민의힘, 동대문2)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심미경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」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이 조례는 최소한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.

□ 서울시교육청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81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, 그 동안 노동조합사무소 지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노조에 따라 사무소 규모, 보증금, 월세 등이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.

- 이에 이 조례안에 서울시교육청이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.

- 주요 내용으로는, 교육감이 노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고, 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상주인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해야 하고, 유휴 공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시설을 임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, 노동조합사무소의 최소·최대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